


의정활동보고서



제248회 정례회(2011. 6. 10 ~ 6. 2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3백만 도민의 숙원인 국제과학벨트 유치를 위해서 동 지원조례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또 유치촉구결의문 채택 등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김관용 도지사의 단식투쟁과 범 시·도민 총 쉼기대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신국제공항 계획 철회에 이어서 대전·충남권으로 과학벨트 거점지역이 결정된 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지난 5월 17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124건의 의안과 3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역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안 처리와 도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다가올 장마에 대비한 홍수해 예방 대책 마련과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7
IV. 민원처리		19
V. 본회의 보고사항		21
VI. 5분 자유발언		32
☐ 이경임 의원(1차 본회의)		32
☐ 최학철 의원(1차 본회의)		35
☐ 김희원 의원(1차 본회의)		38
☐ 변우정 의원(4차 본회의)		42
☐ 이영식 의원(4차 본회의)		46

부 록

☐ 조례안(2건)	53
☐ 결산안(2건)	61
☐ 건의안(1건)	118
☐ 결의안(3건)	124
☐ 청 원(1건)	133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48회 정례회는 2011년 6월 1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15회의 상임위원회와 4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6월 10일(금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경임, 최학철, 김희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6월 16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진 금강송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서 5축 간선도로 봉화 ~울진 구간 4차선 조기 착공 촉구, 자율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전찬걸 의원(울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장두욱 의원이 “돌고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어업인 생존권 확보 방안, 해안 침식문제 및 향후 대책, 교통약자 이동 편의 대책 및 장애인콜택시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6월 17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태환 의원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정책,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 불법유통 대책, 구미지역 일반계 공립고의 과밀학급·과 대학교에 대한 대책, 급속한 인구증가 지구의 학교시설 대책, 교원 업무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박성만 의원이 “영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유치 실패와 관련한 소회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독도영유권 강화, 동서횡단철도 건설, 21세기 뉴새마을정책, 우리 경북의 혼과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안하고 노력을 촉구”하는 질문하였다. 이어진 구자근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과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6월 24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변우정 의원의 “부도난 건설사의 대지권 등기 대책” 관련 5분 자유발언과 이영식 의원의 “도청이전 관련한 감정 저평가 경위 및 대책, 수용지 주민들의 이주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 ‘경상 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 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경상 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

하는 한편,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등 1건의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 밖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정례회기 중인 6. 23(목)에는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1년 6월 10일(금)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1년 6월 10일 ~ 6월 24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누계 26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9	1	2	3	1	3	3	2	3	1
누 계	160	13	21	21	15	15	20	14	21	20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회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0(금) 11:00 (제1차)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비례) ○ 농수산위원회 최학철(경주) ○ 건설소방위원회 김희원(칠곡) ☐ 안전처리 ○ 제24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6. 16(목) 11: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장두옥 의원(건설소방위원회)	
6. 17(금) 11:00 (제3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태환 의원(교육위원회) ○ 박성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구자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6. 24(금) 11:00 (제4차)	☐ 5분 자유발언 ○ 농수산위원회 변우정 의원(구미) ○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의원(안동)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24(금) 11:00 (제4차)	☐ 안전처리 및 폐회 ○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 전부개정 조례안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 ○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0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6(목) 15:00 (제1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24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개정조례(재심사)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6. 14(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6. 23(목) 11:00	☐ 안전심사 ○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6. 14(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경북도립대학, 공무원교육원, 행정지원국	
6. 15(수) 09:30	☐ 현지확인 ○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6. 23(목) 11:00 (제3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해양산업국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	
6. 14 ~ 6. 15	☐ 현지확인 ○ 선진문화관광지 및 물산업현장 방문	
6. 23(목) 10:00	☐ 현지방문 ○ 칠곡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현장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 (사)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道임원과 간담회(12:00)	
6. 14(화) 14:00 (제2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 농민단체와 간담회(11:30) ○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 안	
6. 23(목) 11:00 (제3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건설도시방재국	
6. 14(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0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6. 15(수) 10:30	☐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곡강천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포항)	
6. 23(목) 11:00 (제3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주택조례 개정조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회계 결산보고(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14(화) 10:00	☐ 현지확인 ○ 기숙형고(약목고, 성주고)	
6. 15(수) 10:00	☐ 현지확인 ○ 기숙형고(군위고, 안계고)	
6. 23(목) 11: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20(월) 10:30 (제1차)	☐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공보관실, 감사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경북 도립대학,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6. 21(화) 10:30 (제2차)	☐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투자유치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농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6. 22(수) 10:30 (제3차)	☐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교육청 소관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6(목) 10:00 (제4차)	☐ 주요 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4 (141)	12 (136)	9 (115)	3(1) (20)	(1)		(1)	2 (4)	
조 례 안	소 계	3 (67)	1 (62)	(50)	1(1) (11)	(1)		(1)	2 (4)	
	의 회 제 안	1 (17)	1 (17)	(13)	1(1) (4)					
	도지사 제 출	2 (38)	(34)	(29)	(5)			(1)	2 (3)	
	교육감 제 출	(12)	(11)	(8)	(2)	(1)			(1)	
규 칙 안		(1)	(1)	(1)						
예산·결산		2 (9)	2 (9)	2 (4)	(5)					
동의·승인		1 (15)	1 (15)	1 (13)	(2)					
건 의 안		1 (2)	1 (2)	1 (2)						
결 의 안		3 (19)	3 (19)	1 (17)	2 (2)					
기 타 안		4 (28)	4 (28)	4 (28)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10. 5 교육감, ‘10. 10. 15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1. 5. 31 도지사, ‘11. 6. 13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주택 조례안
(‘11. 5. 31 도지사, ‘11. 6. 24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34)	(6)	(4)	1 (4)	1 (12)	()	2 (3)	1 (2)	(1)	(2)
의 회 운 영										
기 경 회 계	2						2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경	1							1		
농수산										
건 설 소 방	2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34)	2 (31)	()	()	3 (3)	()
의회운영						
기획경제	2	1			1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1				1	
농 수 산						
건설소방	2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3, 결의안 1, 기타안 3)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구자근 의원 외 21명 (2011. 5. 30)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의지 (2011. 6. 1)
송필각 의원 외 46명 (2011. 5. 30)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강화 촉구 결의안	교육 (2011. 6. 1)
경상북도지사 (2011. 5. 31)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문화환경 (2011. 6. 1)
"	경상북도 주택 조례안	건설소방 (2011. 6. 1)
"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상임위(제교육) (2011. 6. 1)
경상북도교육감 (2011. 5. 31)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 (2011. 6. 1)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회계결산보고	"

2. 조례공포 사항(10건)

이송일	이송처	건명	공포일
2011. 5. 13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5. 30 (제3257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58호)
"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59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60호)
2011. 5. 13	"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61호)
"	"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62호)
"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 (제3263호)
"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제3264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255호)
"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3256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11. 5. 24	상 임 위 회 의 실	○ 철곡 캠프캐럴내 고엽제 매립관련 긴급회의 •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추진상황보고 • 진상파악 및 대책 수립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11. 6. 1	울진군 (덕구온천)	○ 2011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 • 의정활동 전문교육 및 토론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 • 주요 현장 견학 등
교 육 위 원 회	2011. 6. 2		
행정보건복지 위 원 회	2011. 5. 25 ∫ 2011. 5. 26	부 산 (센텀호텔)	○ 2011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 •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교육 특강 • 현장 견학 등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11. 6. 1	강원(속초) (농협 설악 수련원)	○ 2011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 • 특강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론 • 타지역 성공사례 및 시설현장 방문 • 동해경비 사령부 위문 등
농 수 산 위 원 회	2011. 6. 3		
건 설 소 방 위 원 회	2011. 6. 7 ∫ 2011. 6. 8	통영, 거제 (마리나 리조트)	○ 2011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 • 예산결산 실전기법 및 행정사무 감사 조사의 효율적인 방법 등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경북도 건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14(토) 10: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상호 의장, 이달, 최학철 의원
- **경북 청소년 페스티벌 및 드림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1. 5. 14(토) 14:30
 - 장 소 : 안동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14(토) 15:00
 - 장 소 : 구미 동락공원
 - 참 석 :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 박태환 의원
- **창립40주년 제11회 전국체신노조 경북지방본부 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15(일) 10: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상호 의장, 최학철 의원
-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한마음 회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15(일) 11:00
 - 장 소 : 포항 종합운동장
 - 참 석 : 한창화 의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총궐기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15(일) 14: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쏜 도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입장권 이벤트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5. 16(월) 11:00
- 장 소 : 대구 농협경북지역본부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관련 협의

- 일 시 : 2011. 5. 16(월) 14:00
- 장 소 : 국회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희원 의원

○ 의원 총회 참석

- 일 시 : 2011. 5. 17(화) 11:00
- 장 소 : 의회 제2별관
- 참 석 : 쏜 도의원

○ 엑스코 확장공사 준공 및 개관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5. 19(목) 11:00
- 장 소 : 대구 엑스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D-100일 다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5. 19(목) 14:00
 - 장 소 : 대구 국채보상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착공식 및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5. 19(목) 14:00
 - 장 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부지(상주시 도남동)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강영석 의원
- 제7회 영양 산채한마당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5. 19(목) 19:00
 - 장 소 : 영양 군청 잔디광장
 - 참 석 :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 2011 경북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1. 5. 20(금)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김말분, 김원석, 김희수,
이정호, 채옥주, 한창화 의원
- 경북학원연합회 총회 및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1. 5. 21(토) 10:00
 - 장 소 :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2011 진로교육 정책포럼 참석
 - 일 시 : 2011. 5. 23(월) 10:00
 - 장 소 : 경상북도 교육청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기 지방재정연구회 의원 경북도의회 방문
 - 일 시 : 2011. 5. 23(월) 17:00
 - 장 소 : 도의회 의장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 건강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24(화) 15:00
 - 장 소 : 김천 종합운동장
 - 참 석 : 나기보 의원
- 포항 MBC시사토론 참석
 - 일 시 : 2011. 5. 25(수) 11:00
 - 장 소 : 포항 MBC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1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1. 5. 26(목) 11: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창숙, 나기보, 배수향, 서정숙 의원

- 제7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5. 26(목) 14:00
 - 장 소 : 대전 의회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
- 2011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5. 27(금) 10: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복지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추재천 의원
- 2011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5. 27(금)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세현 문화환경위원장, 김말분, 김원석, 이정호, 한창화 의원
- 2011 경상북도 새마을 여인상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1. 5. 27(금) 11:00
 - 장 소 : 문경 시민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이왕식 의원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중간용역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5. 27(금)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김명호, 도기욱, 박진현 의원

- **경산 지식산업지구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1. 5. 27(금) 16: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영식 의원
- **2011 성주 생명문화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5. 27(금) 19:00
 - 장 소 : 성주 성밖 앞
 - 참 석 : 박기진, 정영길 의원
-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1. 5. 30(월) 11:00
 - 장 소 :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대구시 산격동)
 - 참 석 : 채옥주 의원
- **제5회 독도지킴이 행사 출정식 참석**
 - 일 시 : 2011. 5. 30(월) 14:00
 - 장 소 : 포항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 참 석 : 한창화 의원
- **제13회 경상북도장애인 생활체육대제전 참석**
 - 일 시 : 2011. 5. 31(화) 10:30
 - 장 소 : 포항 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상호 의장, 김말분, 김하수, 김희수, 박권현,
박병훈, 이정호, 장경식, 정영길 의원

- 사)대한미용사회 제28차 대의원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1. 5. 31(화) 11:00
 - 장 소 : 포항 UA컨벤션
 - 참 석 : 김희수, 장두욱, 채옥주 의원
- 경상북도 의정회 2011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1. 5. 31(화) 12:30
 - 장 소 : 대구시 그랜드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1회 의병의 날 및 항일의병기념공원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1. 6. 2(목) 15:00
 - 장 소 : 청송 부동면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영기 교육위원장
- 경북정체성 국제포럼 참석
 - 일 시 : 2011. 6. 3(금) 10:30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제1회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1. 6. 3(금)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참 석 : 김원석, 박태환, 최우섭, 추재천, 홍광중 의원

- **경일대학교 BRIDGE 창업지원단 기업가정신 로드쇼 참석**
 - 일 시 : 2011. 6. 3(금) 14:00
 - 장 소 : 경산 경일대학교
 - 참 석 :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
- **제16회 환경의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6. 3(금) 14:00
 - 장 소 : 울진 보부상 주막공원
 - 참 석 : 전찬걸 의원
- **경북매일신문 대구본부 이전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1. 6. 3(금) 15:00
 - 장 소 : 대구 동구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정기총회 및 대구·경북인 한마음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6. 4(토) 10:40
 - 장 소 : 서울 국회운동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일 시 : 2011. 6. 6(월) 10:00
 - 장 소 : 경주 충혼탑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 최우섭 의원

- 2011년도 경상북도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정기
총회 참석
 - 일 시 : 2011. 6. 8(수) 11: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장
- 경주 임란의사 추모회 참석
 - 일 시 : 2011. 6. 9(목) 11:00
 - 장 소 : 경주 임란창의 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23회 경상북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석
 - 일 시 : 2011. 6. 10(금) 10:30
 - 장 소 : 경산 생활체육공원내 럭비구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11년 6월 10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이경임 의원(비례) ◎

<<양성평등 정책실현 촉구>>

친박연합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조직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다 더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산업시대에는 남성적이고
육체적인 힘보다는 여성이 지닌 정신적인 능력, 창의력과 다양성,
배려와 포용, 유연성이 시대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3W의 시대’라고도 합니다.(기후-Weather, 웹-Web,
여성-Wo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한
‘여성권한 척도(GEM)¹⁾’에서 우리나라는 108개국 중 68위이며,

1) 정치·사회·경제 분야 등에 대한 여성 참여도를 지표화한 것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GGI)'는 134개국 중 104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200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종합지수에서 12위이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9.5%로 최하위 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조사한 '성평등 정치지수'는 1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 근무제 이용 공무원 현황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5,447명, 서울시 140여명, 경기도와 전라남도 각각 100여명, 부산시와 대전시가 20~3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1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수 전체 418명 중 여성은 11명(2.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2009년부터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현황에서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교육참가율은 418명 중 18명으로 4.3%만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와 결과들을 보면,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문에서 과거보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조직속에서 겪는 차별적 여건과 문화는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도 나름대로는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들이 여성들의 조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공약에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용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공약이 여성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는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소신에 찬 공약이었는지?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실천을 기대합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게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 6월 10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최학철 의원(경주) ◎

<<기후변화 대책 관련>>

경주 출신 최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대책을 짚어보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마련 및 실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이후 평균기온이 약 1.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 속도는 지구 전체 온난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큼니다. 최근 환경부의 '기후변화 경제분석' 자료에 의하면, 2100년까지 기온이 4도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100년까지 연평균 31조원, 90년간 누적액은 2,800조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내 기후변화정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온난화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제고가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경북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42만 천toe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남 160만 2천 toe, 경기 92만 천toe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2008년 12억에서 2010년 36억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3년간 이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포함한 예산 투입내역을 보면 2008년의 경우 101억이었다가 2009년 92억, 2010년에는 84억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입니다. 농업은 자연환경에 매우 의존적이며 농업인 개인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차원의 대응은 기초연구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또한, 경북의 친환경농업실천 현황도 2009년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비율이 8.4%였으나, 2010년도에는 2만 2,326ha로
실천 면적비율이 8.1%로 지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현재의 농업생산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급변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는 피상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품목별 대응
전략 및 신품종육성, 숙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배양식 기술개발
등 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지난
100년 동안 대략 1℃ 가량 상승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기
부터 동해바다의 수온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수온 1℃ 상승은 육지에서 기온
10℃ 상승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다의 생물종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 변화연구는 물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동해어업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 전환과 함께 단순한 문제 인식 차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1년 6월 10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희원 의원(철곡) ◎

<<고엽제 매립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안녕하십니까?

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김관용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약속된 지방자치구조하에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발표가 있기 전 선견지명과 살신성인의 항거자세로 5일간의 단식투쟁을 보여주는 모습은 경북도민은 물론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을 통한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경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5월 16일 전 주한미군 중장비 사병인 스티브 하우스씨의 미국 지역방송증언 내용, 즉 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에 대하여 실증 확인 절차 등 문제 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문제 해결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한미간의 우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5월 20일자에 신문에 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하였으며,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 관계 공무원은 지역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주일 기간 동안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미국 측은 그때마다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경북도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얽매어 찢찢 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한미공동조사단이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프캐럴 부근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개인 교수에게 의뢰하여 놓은 상태에서 지역의 유력인사가 전화를 하여도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일부 언론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는,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내용도 아는 게 없다.”며 “사실 다이옥신이 검출됐어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였다니 일파만파 주민여론은 간과 없이 경북도청의 고급간부의 위기대응능력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일당백을 하고 있는 도백의 반이라도 쫓아가는 노력을 보여줍시다.

2003년 미 극동사령부의 의뢰를 받아 D구역, 41구역에 대한

삼성물산의 2004년 7월 최종보고서에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염 치유 방법이 명기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일 열리는 SOFA 환경분과 2차 회의에서 캠프캐럴 내 조사는 지표 투과레이더(GPR)과 전기비저항탐사법(ER)으로 드럼통 매립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과 비투과 지역에 대해 토양 시추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공동조사단장은 필요하면 시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할 경우 10미터 이상 깊이의 매몰 고엽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사전 각본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한미공동조사단의 행태나 SOFA 환경분과 회의를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 주권은 오고간데 없고 전통적인 한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며,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왜 해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고엽제 조사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칠곡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고엽제 및 화학물질 유입경로, 보관 장소와 방법 및 종류와 총량, 매립, 이전, 처분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합동조사단에 캠프캐럴 주변 마을대표 및 왜관 주민대표, 능력 있는 환경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캠프캐럴 인근 마을 등에 대한 지역 및 주민역학 건강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왜곡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2011년 6월 24일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변우정 의원(구미) ◎

<<부도난 건설사의 대지권 등기 대책>>

농수산위원회 소속 구미출신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택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 주택문제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2001년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현황이
2,253호였으나, 2011년 5월말 현재 5,984호로 10년 전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그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큼니다. 이에
도차원의 강력한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등 다각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도민의 주거 편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부동산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임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
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도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아파트조차도 주택건설업체 부도 등의 여파로 소유권이전 문제가 불거져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정책의 신뢰부재와 지방세수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 당해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공공택지개발 시행자에서 택지분양자인 건설사 그리고 개인분양자 순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공공택지 상태에서는 개인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실제 분양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대지권등기 관련 등록세조차도 징수할 수가 없으므로 지방세수에도 막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IMF 직후에는,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건설업체의 토지 이전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입주자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9년 2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택지개발시행자에서 개인분양자들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 현재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있음에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 하는 경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경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에 정상적인 분양가를 모두 지급하고도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도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지역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산재해 있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에서는 단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 노력과 도 자체의 자율적 결정 등의 과감한 조치만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도세감면조례를 통하여 부도난 건설사가 납부하여야 할 등기 관련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여 서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서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중고와

지방세수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다시 한번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1년 6월 24일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이영식 의원(안동) ◎

<<도청이전 관련>>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래 천년 도읍지인 신 도청 소재지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이주민 보상가액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주민들의 애틋한 심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결단으로 10여년 이상 끌어오던 경북 도청 이전이 장풍득수형의 명당으로 알려진 검무산 자락의 안동, 예천으로 결정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6월 도청 신청사 준공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북 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 도청 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도청 이전지로 결정되고 난 후, 풍천·호명면 일대의 500여 이주민들은 5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세거지를 떠나야하는 안타까움을 뒤로 한 채, 미래 경북의 새천년

도읍지 건설과 옹도 경북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1년간 협의해서 결정된 보상가격 통지문을 받아 든 주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에 말문을 닫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보상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보상 가액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보상 총액 문제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보상예상가격을 6,200억원 정도로 예상하였다가, 물권 조사 과정에서 분묘와 비닐하우스 동수가 예상보다 적게 조사되어 5,6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된 보상 가액은 예상가격의 55% 정도인 3,08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예정지 330만평을 기준으로 평당 10만원이 되지 않는 보상 가격입니다.

보상 통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본인의 눈을 의심하면서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과 경상북도와 개발공사, 감정평가협회에

속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상가액을 받아들이기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는 2년 전인 2009년 보상액이 결정되었
으며, 995만㎡에 보상 총 가액은 588억원, 평당 평균 20만원
정도이며 경북은 1,096만㎡에 보상 총 가액은 3,070억원, 평당
평균 10만원 정도입니다.

2년이나 늦게 진행된 경북도청 이전지 보상액이 충남도청
이전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번 보상가액 결정의 가장 큰 의문은 감정 평가 기준 시점을
2008년 6월 시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상가액이 결정될 때까지도 주민들은 2009년 6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왜
2008년 6월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경북도와 개발공사의 성의
있고 진정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2007년 10월 신설된 토지 보상법 제 70조
5항을 근거로 감정 평가 협회에서 국토부에 질의하여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주민
들은 그러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며, 2008년 6월 도청 이전
지정공고를 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6월 보상가액을 결정하면서,

3년 전 지정할 당시의 가격을 수용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뿐이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충남도는 2006년 2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7년
1월 주민 공람을 하여, 보상시점을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경북도는 2008년 6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9년
8월 주민 공람을 하였는데, 보상시점을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 관용 지사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액이 아닙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조상들의 유산이 곳곳에 묻어있는 평생을
살면서 가꾸어 온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는 주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보상시점이 어떤 근거로 2008년으로
결정되었는지 2008년으로 결정된 부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상시점을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
하였다면 충남도청 보상금액과 비슷하고 주민들의 예상치에
90% 정도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부재지주를 제외한 편입지역 주민 410가구 중 1억원 미만 보상가구는 133세대, 1억원에서 2억원 미만 보상가구가 60세대로 전체 47% 가구가 2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습니다.

2억원 미만 보상을 받는 이주민들의 이주 대책 및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청 이전 특별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건
- 결산안 : 2건
- 건의안 : 1건
- 결의안 : 3건
- 청 원 : 1건

■ 조 례 안

(수정가결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20세
이상의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노인,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공고) ①경상북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장애인 등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제6조(우선 계약) ①도지사 등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등)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 등은 계약기간 내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이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및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2년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경상북도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되었거나 위탁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 등의”로 하고,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9호 내지 11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 기관장(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제2조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
10.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11.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 산 안

-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31, 경상북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6. 16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6. 20 : 상정·질의·토론)
 -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6. 21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정 병 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운용의 결산 승인

4.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 괄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 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2억 19백만원²⁾을 포함하여 5조 6,451억 40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5조 7,842억 78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5조 4,656억 64백만원이며
 - 차입잔액은 3,186억 14백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91억 8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규모 ◆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B)	세출 (C)	잉 여 금 (B-C)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6,451	57,843	54,657	3,186	937	58	2,191
일 반 회 계	48,082	48,945	46,885	2,059	923	58	1,078
특 별 회 계	8,369	8,898	7,771	1,127	13	0	1,113

2) 종합심사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심사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52억 46백만원을 포함하여 4조 8,082억 31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4조 8,944억 59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4조 6,885억 33백만원이며
- 잔인잔액은 2,059억 26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7억 63백만원임.

2) 특별회계

○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73백만원을 포함하여 8,369억 10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8,898억 19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7,771억 32백만원이며
- 차인잔액은 1,126억 8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3억 46백만원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예 산 현 액	5,645,140	100.0	4,808,231	100.0	836,910	100.0
세 입 결 산 액 (A)	5,784,278	102.5	4,894,459	101.8	889,819	106.3
세 출 결 산 액 (B)	5,465,664	96.8	4,688,533	97.5	777,132	92.9
차 인 잔 액 (A-B)	318,614	5.6	205,926	4.3	112,687	13.5
명시·사고이월	93,688	1.7	92,346	1.9	1,342	0.2
보조금집행잔액	5,818	0.1	5,818	0.1	0	0
순 세 계 잉 여 금	219,108	3.9	107,763	2.2	111,346	13.3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 입 (B)	세 출 (C)	잉여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6,451	57,843	54,657	3,186	937	58	2,191
일 반 회 계	48,082	48,945	46,885	2,059	923	58	1,078
특 별 회 계	8,369	8,898	7,771	1,127	13	0	1,113
공 기 업	소 계	3,425	3,933	3,186	747	0	747
	지 역 개 발 기 금	3,425	3,933	3,186	747	0	747
기 타	소 계	4,944	4,965	4,586	380	13	366
	의 료 급 여 기 금	3,823	3,831	3,798	33	0	33
	치 수 사 업	345	350	285	66	9	57
	경북도립대학운영	91	91	88	4	3	1
	광 역 교 통 시 설	34	34	22	12	0	12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650	658	393	265	2	263

2. 세입결산

가. 총 괄

- 2010년도 **세입결산액**은 5조 7,842억 78백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5조 6,451억 40백만원보다 1,391억 38백만원이 증가(2.5%)하였으며,
- 그 중 **일반회계**가 4조 8,944억 59백만원(84.6%)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8,898억 19백만원(15.4%)임.
- 2010년도 미수납액은 652억 48백만원으로서, 141억 54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10억 9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세입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 월	
합 계	5,645,140	5,849,526	5,784,278	65,248	14,154	51,094	98.9
일 반 회 계	4,808,231	4,959,073	4,894,459	64,614	14,140	50,474	98.7
특 별 회 계	836,910	890,453	889,819	634	14	620	99.9
공 기 업	342,524	393,280	393,280	0	0	0	100.0
기 타	494,386	497,173	496,539	634	14	620	99.9

$$\begin{array}{rcl} \text{※ 예산현액} & =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5,849,526\text{백만원} & & 5,576,922\text{백만원} \quad 68,219\text{백만원} \end{array}$$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8,944억 5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8,082억 31백만원보다 862억 28백만원(1.8%)이 증가하였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1조 727억 95백만원, 세외수입 3,200억 64백만원, 지방교부세 8,911억 23백만원, 국고보조금 2조 5,854억 78백만원, 국내차입금 250억원임.
- 미수납액은 646억 14백만원으로, 141억 40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04억 7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정수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C/A	C/B
합 계	4,808,231	4,959,073	4,894,459	64,614	14,140	50,474	101.8	98.7
지 방 세	1,003,000	1,134,595	1,072,795	61,800	14,040	47,760	107.0	94.6
세 외 수 입	311,384	322,878	320,064	2,814	100	2,715	102.8	99.1
지방교부세	883,699	891,123	891,123	0	0	0	100.8	100.0
국고보조금	2,585,148	2,585,478	2,585,478	0	0	0	100.0	100.0
국내차입금	25,000	25,000	25,000	0	0	0	100.0	100.0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4,813,201백만원 4,676,060백만원 137,141백만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898억 1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369억 10백만원보다 529억 9백만원이 증가(6.3%) 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3,932억 80백만원, 의료 급여기금운영 3,831억 46백만원, 치수사업 350억 39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91억 22백만원, 광역교통시설 34억 37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657억 96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6억 34백만원으로, 14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억 20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정수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 월	C/A	C/B
합 계	836,910	890,453	889,819	634	14	620	106.3	99.9
지 역 개 발 기 금	342,524	393,280	393,280	0	0	0	114.8	100.0
의 료 급 여 기 금	382,305	383,146	383,146	0	0	0	100.2	100.0
치 수 사 업	34,506	35,634	35,049	595	14	581	101.5	98.3
경북도립대학운영	9,110	9,122	9,122	0	0	0	100.1	100.0
광 역 교 통 시 설	3,418	3,476	3,437	39	0	39	100.6	98.9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65,048	65,795	65,796	0	0	0	101.1	100.0

$$\begin{array}{rcl} \text{※ 예산현액} & =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836,910\text{백만원} & & 833,937\text{백만원} \quad 2,973\text{백만원} \end{array}$$

3. 세출결산

가. 총 괄

-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5조 4,656억 64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조 6,451억 40백만원 대비 96.8%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조 6,885억 3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771억 32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1,794억 76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936억 88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857억 89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B/A)
합 계	5,576,922	5,645,140	5,465,664	93,688	85,789	96.8
일반회계	4,742,985	4,808,231	4,688,533	92,346	27,352	97.5
특별회계	833,937	836,910	777,132	1,342	58,436	92.9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조 6,885억 3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8,082억 31백만원 대비 97.5%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6,636억 9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12억 72백만원, 교육 30억 83백만원, 문화 및 관광 3,157억 95백만원, 환경보호 4,397억 43백만원, 사회복지 1조 1,358억 49백만원, 보건 687억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579억 91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290억 26백만원, 수송 및 교통 2,974억 3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66억 72백만원, 과학기술 254억 30백만원, 기타 2,838억 36백만원임.
- 집행잔액 1,196억 98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923억 46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73억 52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4,742,985	4,808,231	4,688,533	92,346	27,352	97.5
일반공공행정	663,983	672,921	663,694	4,912	4,315	98.6
공공질서 및 안전	262,550	272,537	261,272	10,877	388	95.9
교 육	3,084	3,084	3,083	0	1	99.9
문화 및 관광	317,397	317,579	315,795	654	1,131	99.4
환 경 보 호	439,996	439,996	439,743	0	254	99.9
사 회 복 지	1,133,466	1,137,271	1,135,849	0	1,423	99.9
보 건	70,735	70,735	68,706	1,223	806	97.1
농림해양수산	863,085	876,596	857,991	11,245	7,361	97.9
산업중소기업	128,002	129,692	129,026	0	666	99.5
수송 및 교통	312,746	347,187	297,436	48,500	1,250	85.7
국토 및 지역개발	210,920	221,811	206,672	14,936	204	93.2
과 학 기 술	25,463	25,463	25,430	0	33	99.9
예 비 비	25,561	7,304	0	0	7,304	0.0
기 타	285,997	286,055	283,836	0	2,219	99.2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771억 3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8,369억 10백만원 대비 92.9%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3,185억 80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798억 20백만원, 치수사업 284억 70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87억 52백만원, 광역교통시설 22억 40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92억 69백만원임.
- 집행잔액 597억 78백만원 중 13억 42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84억 36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지출비율 (C/B)
합 계	833,937	836,910	777,132	1,342	58,436	92.9
지 역 개 발 기 금	342,524	342,524	318,580	0	23,944	93.0
의 료 급 여 기 금	382,305	382,305	379,820	0	2,485	99.3
치 수 사 업	31,933	34,506	28,470	862	5,174	82.5
경북도립대학운영	9,110	9,110	8,752	300	58	96.1
광 역 교 통 시 설	3,418	3,418	2,240	0	1,177	65.5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64,648	65,048	39,269	180	25,598	60.4

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³⁾은 어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 5억원, 지리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3억 80백만원, 정보화 마을 콘텐츠 구축 1억원 등 총 9건에 12억 90백만원이며,
- **예산이체**⁴⁾는 조직개편과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총 134건에 1,397억 2백만원임.

라. 계속비 집행

- 2010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⁵⁾

-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255억 61백만원 중 구제역 방역 추진 등 81건 182억 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1억 5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9백만원임.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⁶⁾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등 127건에 936억 88백만원으로

3) 『예산전용 상세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4)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53~863쪽 참조

5)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6)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 그 중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123건에 923억 4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5건 639억 2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8건에 284억 21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13억 4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에 4건 13억 42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음.

사. 채무부담 행위⁷⁾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건설 1건에 60억원임.

아. 수입대체경비

- 지방재정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중 세입결산액은 10억 4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억 47백만원임.

5. 세입 · 세출 외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10년도 말 경상북도가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등 총 15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2,940억 90백만원보다 389억 91백만원이 증가한 3,330억 80백만원임.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E=A+D)
		조성액(B)	사용액(C)	증감(D=B-C)	
계	294,090	128,191	89,201	38,991	333,080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3,397	118	108	12	3,40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56,860	69,698	37,532	32,166	189,025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4,599	2,406	1,213	1,193	5,791
체 육 진 흥 기 금	15,770	555	500	55	15,825
농 어 촌 진 흥 기 금	40,820	42,798	38,590	4,208	45,028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9	56	55	1	1,519
포 플 라 장 학 기 금	268	9	12	△2	266
사 회 복 지 기 금	11,687	409	291	118	11,805
재 해 구 호 기 금	17,266	598	253	345	17,612
식 품 진 흥 기 금	11,552	3,551	2,601	949	12,502
여 성 발 전 기 금	3,555	126	140	△14	3,542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386	117	112	5	3,391
재 난 관 리 기 금	22,344	6,369	6,692	△323	22,02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067	1,381	1,104	277	1,344
통 합 관 리 기 금	82,865	5,867	4,910	957	83,822

-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개별기금 조성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함에 따라 2010 회계연도 결산에서 제외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10년도말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1조 2,788억 61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1조 2,086억 73백만원보다 701억

8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1억 41백만원, 특별회계 8,825억 52백만원, 기금 2,764억 68백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 2백만원, 융자금 채권이 1조 2,787억 5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채 권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1,278,861	120,141	882,252	276,468	
보증금채권	102	96	6	0	○ 일반회계 • 전화 전용회선 예치금 등 96 ○ 특별회계 • 경북도립대학 6
융자금채권	1,278,759	120,045	882,245	276,468	○ 일반회계 •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7,787 • 주택융자 102,223 • 기타 34 ○ 특별회계 • 지역개발 882,245 ○ 기 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167,440 • 농어촌진흥기금 93,018 • 기타 16,010

나. 채 무

- 2010년말 경상북도의 채무현재액은 9,064억원으로, 2009

년말 8,826억원보다 238억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60억원, 특별회계 7,804억원임.
- 종류별로는 지방채 7,804억원, 차입금 1,200억원, 채무 부담행위 60억원임.

◆ 채무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회 계 별				채 무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9,064	1,260	7,804	0	
지 방 채	7,804	0	7,804	0	
일반회계 차 입 금	1,200	1,200	0	0	• 지방공공자금 차입 1,200
공 기 업 특별회계	7,804	0	7,804	0	• 지역개발기금채권 매출 7,804
채무부담행위	60	60	0	0	• 지방도건설 60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10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909억 14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1조 448억원 23백만원보다 1,460억 9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가 2,033필지 487억 3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393필지 810억 9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322억 72백만원이 순감하였음.
 - 건물은 23동 181억 8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34동 101억

48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80억 37백만원이 순증하였음.

- 또한 기계기구가 1건 53백만원, 지적재산권이 6건 6백만원, 유가증권이 1건 1,695억원 40백만원, 용익물건이 6건 1억 20백만원이 순증하였으며 항공기는 건수 변동 없이 현재액만 6억 5백만원이 순증하였으며 그 외 기타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5,773,317	10,448	1,643	1,461	5,774,960	11,909
토 지(필)	79,625	6,980	1,640	△323	81,265	6,658
건 물(동)	608	1,725	△11	80	597	1,805
입목축(주)	3,745,000	95	0	0	3,745,000	95
공작물(점)	3	32	0	0	3	32
기계기구(점)	0	0	1	1	1	1
선 박(척)	2	21	0	0	2	21
항공기(대)	2	131	0	6	2	137
지 적 재 산 권	43	1	6	1	49	1
유가증권(주)	1,947,955	1,443	1	1,695	1,947,956	3,139
용익물권(건)	75	18	6	1	81	19
회원권(건)	4	2	0	0	4	2

나. 물 품

- 2010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223억 98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212억 73백만원보다 11억 25백

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22대 6억원, 화물트럭 7대 2억원 등을 구매 또는 관리 전환하여 21억원이 증가하고, 복사기 23대 1억원, 액체크로마토 그래프 2대 1억원 등을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여 9억원이 감소하였음.

◆ 증감사유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959	213	199	11	2,158	224
구 매	1,717	198	251	13	1,968	211
관리전환	242	15	△52	△2	190	13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10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5조 7,842억 78백만원, 세출 5조 4,656억 64백만원으로 3,186억 1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세 입	세 출	잔 액
합	계	5,784,278	5,465,664	318,614
일	반 회 계	4,894,459	4,688,533	205,92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93,280	318,580	74,700
	지역개발기금운영	393,280	318,580	74,700
기	타 특 별 회 계	496,539	458,552	37,988
	의료급여기금운영	383,146	379,820	3,326
	치 수 사 업	35,039	28,470	6,569
	경북도립대학운영	9,122	8,752	370
	광 역 교 통 시 설	3,437	2,240	1,197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65,796	39,269	26,526

나. 세입세출 외 현금

- 2010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44억 14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6억 3백만원보다 18억 1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76백만원, 보관금 8억 2백만원, 잡종금 등 기타 35억 36백만원임.

◆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종 류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 잔 액
			증 가 액	지 출 액	차 감 액	
합	계	2,603	156,831	155,020	1,811	4,414
	보 증 금	17	225	166	59	76
	보 관 금	763	17,663	17,624	39	802
	잡종금 등 기 타	1,823	138,943	137,230	1,713	3,536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5조 6,451억 4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조 5,678억 28백만원보다 773억 12백만원(1.4%)이 증가하였으며,
- 2006년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10.7%임.

◆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 장 륜(%)	
						연평균	전년대비
예산현액	39,550	43,032	48,739	55,678	56,451	10.7	1.4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5%인 5조 7,842억 78백만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5조 4,656억 64백만원으로,
- 차인잔액은 3,186억 1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652억 67백만원, 사고이월 284억 21백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 936억 88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8억 1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191억 8백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 부문은 연평균 10.2%, 세출부문은 11.2%씩 증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결산 결과는 세입부문이 1.4%, 세출부문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전전년 대비 11.4%와 12.5%에 비해 증가세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0.6%, 세출부문 0.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6.1%, 세출부문이 10.3%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세출이 다른 부문보다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공기업(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부문이 전년도 대비 26.7%나 증가한 것 때문임.
-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조정에 따른 것이며,
- 앞으로 복지 수요 증가, SOC 사업의 국비 의존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道의 경우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에 의한 시책을 반영하여 이러한 의존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체납세 징수대책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재정 편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함.

◆ 수입·세출 5년간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장율(%)	
							연평균	전년대비
세입(A)	합 계	4,107,912	4,472,017	4,964,626	5,705,261	5,784,278	10.2	1.4
	일반회계	3,356,733	3,711,722	4,201,944	4,866,288	4,894,459	-	0.6
	특별회계	751,179	760,295	762,682	838,973	889,819	-	6.1
	공기업	368,212	273,637	257,101	355,529	393,280	-	10.6
	기타	382,967	486,658	505,581	483,444	496,539	-	2.7
세출(B)	합 계	3,775,453	4,105,826	4,592,533	5,372,353	5,465,664	11.2	1.7
	일반회계	3,092,367	3,383,907	3,888,972	4,668,138	4,688,533	-	0.4
	특별회계	683,086	721,919	703,561	704,215	777,132	-	10.3
	공기업	318,571	260,056	229,776	251,522	318,580	-	26.7
	기 타	364,515	461,863	473,785	452,693	458,552	-	1.3
차입잔액(A-B)		332,459 (8.1%)	366,191 (8.2%)	372,093 (7.5%)	332,907 (5.8%)	318,614 (5.5%)	-	-

◆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전년 대비 증감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예산현액	%	결 산 액	%
계	48,132	48,082	48,663	48,945	△50	△0.1	282	0.6
지 방 세	7,600	10,030	7,988	10,728	2,430	32.0	2,740	34.3
세 외 수 입	3,975	3,114	4,202	3,201	△861	△21.7	△1,001	△23.8
지 방 교 부 세	8,512	8,837	8,730	8,911	325	3.8	181	2.1
보 조 금	26,595	25,851	26,293	25,855	△744	△2.8	△438	△1.7
지방채 및 예치금	1,450	250	1,450	250	△1,200	△82.8	△1,200	△82.8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조 8,944억 5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 그 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조 4,76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71.0%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312억 74백만원(0.9%)이 감소하였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3,928억 59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738억 51백만원(14.3%)이 증가하였음.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총 결손처분액은 141억 5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1억 4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백만원임.
-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140억 40백만원, 세외수입은 1억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전년도 126억 68백만원에 비해 13억 72백만원이 증가한 140억 40백만원을 정리하여 10.8% 증가하였으며, 체납율은 2005년~2009년까지는 완만한 증감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전년대비 2.5%나 감소하였음.
- 지방세 결손처분액 140억 40백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51억원, 행방불명 2억원, 시효완성 6억원, 공매시
무배당 77억원, 기타 5억원 등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
방세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
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채납율(%) (C/A)
			계(C)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2005년	753,105	699,136	53,969	3,956	50,013	7.2
2006년	869,517	811,081	58,436	6,828	51,608	6.7
2007년	897,135	833,996	63,139	9,276	53,863	7.0
2008년	859,046	788,327	70,720	12,396	58,324	8.2
2009년	867,509	798,850	68,659	12,668	55,992	7.9
2010년	1,134,595	1,072,795	61,800	14,040	47,760	5.4

◆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 타
지방세	14,040 (100.0%)	5,128 (36.5%)	206 (1.5%)	553 (3.9%)	7,670 (54.6%)	484 (3.4%)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경상북도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6종으로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898억 19백만원임.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 3,932억 80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831억 46백만원, 치수사업 350억 39백만원, 경북도립대학운영 91억 22백만원, 광역교통시설 34억 37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657억 96백만원임.
- 2006년부터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이 2008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채권 매출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까지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 3년간 1,18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급여진료비 등 위탁사업의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10년도 세입이 34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61.4%)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광역도로 사업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임.

◆ 연도별 ·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751,179	760,295	762,681	838,973	889,819
지역개발기금	368,212	273,637	257,101	355,529	393,280
의료급여기금	286,838	384,736	405,050	385,038	383,146
치수사업	49,521	39,771	33,452	36,848	35,039
경북도립대학운영	6,255	7,118	8,328	8,293	9,122
광역교통시설	10,181	9,380	4,171	2,129	3,437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30,172	45,653	54,579	51,137	65,796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10년도에 총 8,904억 53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898억 19백만원을 징수하고 6억 34백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음.
- 미수납 이월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81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39백만원으로 총 6억 20백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음.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조 6,885억 33백만원

으로 예산현액 4조 8,082억 31백만원의 97.5%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결산내역⁸⁾** 중 특이사항을 보면

- 전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부문별 1조원을 넘는 지출을 보인 사회복지 부문이 1조 1,358억 49백만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8,579억 91백만원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경비인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6,636억 94백만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문이 30억 83백만원으로 0.1%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부문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순위	부 문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비율
	총 계	4,808,231	4,688,533	
1	사 회 복 지	1,137,271	1,135,849	24.2
2	농 립 해 양 수 산	876,596	857,991	18.3
3	일 반 공 공 행 정	672,921	663,694	14.2
4	환 경 보 호	439,996	439,743	9.4
5	수 송 및 교 통	347,187	297,436	6.3

※ 총 14개 부문별 결산내역 중 상위 5개 부문만 작성

8) 종합심사보고서 『부문별 세출 결산 내역』 참조

(2) 예비비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255억 61백만원 중 구제역 방역 등 81건에 182억 5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1억 5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9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내역** 81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47건으로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 비용이며, 그 다음은 11건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비용이며, 나머지는 신공항 추진본부 T/F팀 운용경비나 폭설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용 등임.

(3)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65건 639억 25백만원, 사고이월 58건 284억 21백만원으로 총 123건에 923억 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1억원(41.5%) 이 증가하였음.
-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도청 및 의회신청사 건립공사 계약 연계에 따른 감리비 이월과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협의를 지연됨에 따라 이월사업 건수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 때문으로 판단됨.

◆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평균	전년 대비
73	79,072	88	75,183	134	137,141	82	65,246	123	92,346	16.8%	41.5%

(4) 집행잔액(불용액) 현황⁹⁾

- 201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8,082억 31백만원의 0.6%에 해당하는 273억 5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7%인 524억 65백만원이나 감소한 규모로서,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83백만원, 예산절감이 5억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이 125억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92백만원, 예비비가 73억 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불용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0년	27,352	2,383	466	12,508	4,692	7,304
2009년	79,817	2,511	959	13,178	40,654	22,515

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현황(5천만원 이상)』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5)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¹⁰⁾

-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도비 포함) 2조 1,791억 63백만원 중 2조 1,497억 13백만원(98.6%)을 집행하고, 221억 95백만원(1.0%)을 이월하였으며, 72억 55백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이 98.6%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염병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12억원), 치수방재과 소관 고향의 강 사업(10억원)은 전액을 이월시켰으며, 소방본부 소관 병원 전 의료지도 체계 구축(43백만원)은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겼음.

(6) 예산전용 현황¹¹⁾

- 2010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총 9건에 12억 90백만원으로 전년도 3건 1억 25백만원 대비 932%나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나 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통계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증 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금액	증감률
일반회계	3	125	9	1,290	1,165	932.0%

10)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11) 『예산전용 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나. 특별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771억 3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369억 10백만원의 92.9%를 지출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만 4건 13억 42백만원임.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음.

(2) 연례적 사업비 이월 지양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부사업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으로 8억 6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9.7%),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부사업 『대학시설물 개보수 외 1건』으로 3억원(예산현액 대비 16.3%),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부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1억 80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0.0%)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 이렇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0%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 263억 46백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40.5%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2.2%)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지 못하여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출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출사유가 줄어들거나 미발생하면 반드시 추경 등을 통해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 현황(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예산현액(A)	순세계잉여금(B)	비율(B/A)
의료급여기금운영		382,305	3,326	0.9%
치수사업		34,506	5,707	16.5%
경북도립대학운영		9,110	70	0.8%
광역교통시설		3,418	1,197	35.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65,048	26,346	40.5%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 : 2.2%

⇒ 예산현액 4,808,23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7,763백만원

4. 종합의견

-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21C 미래 경북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R&D와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지방이전 지원,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및 道民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사업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대책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연간 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은 개선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미흡』 등 11건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먼저 확정지은 다음 세입예산을無理하게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을 발생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道의 경우 이런 사례 없이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종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I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31,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1. 6. 16

다. 상정일자 :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2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6. 22 : 상정·질의·토론·의결)

III.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5억 2백만원을 포함

하여 3조 2,866억 5천 9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3조 3,066억 8천 3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2조 8,682억 6천 7백만원으로
- 결산차액(잉여금)은 4,384억 1천 6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3,286,659	3,306,683	2,868,267	438,416	○ 순세계잉여금 : 146,323 ○ 이 월 금 : 277,693 • 명 시 이 월 : 135,555 • 사 고 이 월 : 142,138 ○ 계 속 비 이 월 : 0 ○ 국고보조금잔액 : 0 ○ 지방교육채상환 : 14,400

-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384억 1천 6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776억 9천 3백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144억원을 제외하고 1,463억 2천 3백만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함. 이는 2009년도 순잉여금 1,898억 5백만원 대비 434억 8천 2백만원(△22.9%)이 감소한 것임.

◆ 2010 잉여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세 계 잉여금 (C=A-B)	이월액 (D)	계속비 이 월 (E)	국 고 보조금 잔 액 (F)	지 방 교육채 상 환 (G)	순잉여금 (C-D-E-F-G)	2009년도 순잉여금
계	3,154,157	2,868,267	438,416	277,693	0		14,400	146,323	189,805

나.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3조 2,866억 5천 9백만원으로써

세입 결정액은 3조 3,068억 8천 9백만원이며, 이 중 3조 3,066억 8천 3백만원은 수납되었고, 9백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1억 9천 7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불납 결손액 9백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9백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시효완성 및 학생의 자·퇴학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1억 9천 7백만원은

○ 교수-학습활동수입 1천만원

○ 자산수입 1천 9백만원

○ 잡수입 등 1억 6천 9백만원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자산수입,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및 재산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수납율 ③/②
합 계	3,286,659	3,306,889	3,306,683	9	197	99.9
이전수입	2,897,083	2,912,739	2,912,739	-	-	100.0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2,629,179	2,637,677	2,637,667	-	-	100.0
지방자치단체 이 전 수 입	263,419	268,766	268,766	-	-	100.0
기타이전수입	4,486	6,295	6,295	-	-	100.0
자체수입	52,869	57,443	57,238	9	197	99.6
교 수 - 학 습 활 동 수 입	29,471	29,532	29,514	9	10	99.9
행정활동수입	672	651	651	-	-	100.0
자 산 수 입	8,795	10,443	10,424	-	18	99.8
이 자 수 입	12,124	13,052	13,052	-	-	100.0
잡 수 입	1,808	3,765	3,596	-	169	95.5
차 입	14,399	14,399	14,399	-	-	100.0
지 방 교 육 채 및 학 교 채	14,399	14,399	14,399	-	-	100.0
기 타	322,307	322,307	322,307	-	-	100.0
전년도이월금	322,307	322,307	322,307	-	-	100.0

□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수납액 기준)

이전수입은 2조 9,127억 3천 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88.1%임.

-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6,376억 7천 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7억 6천 6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62억 9천 5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은 572억 3천 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7%이며

- 교수-학습활동수입 295억 1천 4백만원
- 행정활동수입 6억 5천 1백만원
- 자 산 수 입 104억 2천 4백만원
- 이 자 수 입 130억 5천 2백만원
- 잡 수 입 35억 9천 6백만원임.

차입은 143억 9천 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0.4%이고, 이월금은 3,223억 7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8%임.

다. 세 출

□ 세출예산현액은 3조 2,866억 5천 9백만원으로서

예산액 3조 1,541억 5천 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5억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2조 8,682억 6천 7백만원은 지출(87.3%)하였고, 2,776억 9천 3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8.4%)하였으며, 1,406억 9천 9백만원은 불용(4.3%)처리 하였음.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3,154,157	132,502	3,286,659	2,868,267	277,693	140,699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별	예 산 액 ①	예 산 결정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 ④-⑤	불용율 ⑥/③
합 계	3,154,157	132,502	3,286,659	2,868,267	277,693	140,699	4.3
유 아 및 초중등교육	2,899,608	119,875	3,019,483	2,745,450	226,019	48,014	1.6
인적자원운용	1,458,401	20,934	1,458,805	1,446,018	0	12,786	0.9
교 수-학 습 활 동 지 원	292,981	15,534	308,515	294,056	3,242	11,218	3.6
교육격차해소	102,325	3,179	105,504	101,619	716	3,169	3.0
보 건/급 식/ 체 육 활 동	44,353	3,896	48,249	43,874	3,672	704	1.5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649,290	6,178	655,468	620,644	27,207	7,617	1.2
학교교육여건 개 선 시 설	352,258	90,683	442,941	239,239	191,183	12,520	2.8
평생·직업교육	12,688	108	12,796	12,322	36	438	3.4
평 생 교 육	8,746	108	8,854	8,394	36	424	4.8
직 업 교 육	3,942	-	3,942	3,928	0	13	0.3
교 육 일 반	241,861	12,519	254,380	110,495	51,638	92,248	36.3
교육행정일반	48,344	1,923	50,267	46,093	945	3,229	6.4
기관운영관리	78,074	10,979	89,053	35,483	50,693	2,877	3.2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28,924	0	28,924	28,918	0	6	0.0
예비비 및 기타	86,519	△383	86,136	0	0	86,136	100.0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98억 5천만원
- 예산 절감 7억 8천 6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933억 5천 1백만원
- 집행잔액 367억 1천 2백만원임.

◆ 불용액 내역(사업별)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원인별내역				비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합 계	3,286,659	140,699	9,850	786	93,351	36,712	
인적자원운용	1,458,805	12,786	1,069	20	1,947	9,750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308,515	11,218	3,346	189	1,648	6,035	
교육격차해소	105,504	3,169	65	0	940	2,134	
보건 / 급식 / 체육 활동	48,249	704	102	8	45	549	
학교 재정 지원 관리	655,468	7,167	480	0	1,737	5,400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442,941	12,520	3,837	0	47	8,636	
평생 교육	8,854	424	30	7	79	308	
직업 교육	3,942	13	0	0	0	13	
교육행정일반	50,267	3,229	280	424	679	1,845	
기관운영관리	89,053	2,877	641	137	93	2,006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8,924	6	0	0	0	6	
예비비 및 기타	86,136	86,136	0	0	86,136	0	

라. 예 비 비

- 2010회계연도 예비비는 2010년 교장공모제 확대실시에 따른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추가실시에 따른 것으로 지출 결정액은 3억 8천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천 2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사 유
합계	383	172	-	211	
교원자격연수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147	56	-	91	• 2010년 교장공모제 확대실시에 따른 초등교장 자격연수 추가 실시
교원자격연수 (교육정책국 교원지원과)	236	116	-	120	• 2010년 교장공모제 확대실시에 따른 중등교장 자격연수 추가 실시

마.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이체¹²⁾

- 예산이체는 2010년 9월 1일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업무이관 및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88건 487억 7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사. 예산전용

- 예산전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차세대 나이스 구축

12) 『예산이체 상세내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37~1076쪽 참조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공동분담금 1건에 10억 5천 2백만원임.

아. 계 비 : 해당사항 없음.

자.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3조 2,866억 5천 9백만원 중 2,776억 9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이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216건에 1,355억 5천 5백만원(48.8%)
- 사고이월 311건에 1,421억 3천 8백만원(51.2%)임.

◆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3,286,659	277,693	-	135,555	142,138	8.4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993억 2천 7백만원보다 29억 9천 6백만원이 증가된 1,023억 2천 3백만원으로써
- 수업료 5백만원, 대여장학금 19억 8천 7백만원, 임차보증금 1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잡수입 1천 7백만원, 재산수입(임대료) 1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증	감		
계	99,327	2,996	17,691	14,695	102,323	
원어민교사전세자금	81	-	-	-	81	
수 업 료	5	5	9	4	10	
잡 수 입	132	△17	-	17	116	
대 여 장 학 금	97,054	1,986	16,281	14,295	99,039	
사 무 실 임 대 료	120	-	-	-	120	
임 차 보 증 금	1,850	1,035	1,382	347	2,885	
재산수입(임대료)	85	△13	19	32	72	

2) 채 무

-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액 5,658억 8백만원보다 711억 4천 3백만원이 증가된 6,369억 5천 2백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 지 급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 환· 소멸액			
합 계	565,808	71,144	109,186	38,042	636,952	-	
차입금	156,327	-	14,400	14,400	156,327	-	
BTL	409,481	71,144	94,786	23,642	480,625	-	

나. 재 산

1)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3,327억 7천만원이 증가된 4조 3,626억 4천만원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3,316억 5천만원이 증가된 4조 2,959억 3천 6백만원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11억 2천만원이 증가된 667억 4백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4,029,869	322,770	389,991	57,221	4,362,640
행정재산	3,964,285	331,650	378,008	46,358	4,295,936
일반재산	65,584	1,120	11,983	10,863	66,704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126억 1백만원이 증가된 2,661억 7천 5백만원으로써 전기·통신기기 등 10종, 51,341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

(단위 : 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 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 해 년 도 현 재 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기·통신 기기 등 10 종	49,809	253,574	6,096	44,982	4,564	32,381	51,341	266,175

V.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5억 2백만원을 포함하여 3조 2,866억 5천 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은 3조 3,068억 8천 9백만원을 세입결정하여
3조 3,066억 8천 3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억 6백만원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866억 5천 9백만원의 87.3%인
2조 8,682억 6천 7백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4,384억 1천 6백
만원으로 이월금 2,776억 9천 3백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144억원, 순잉여금 1,463억 2천 3백만원임.

2. 세입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수입과 차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100% 수납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99.6% 수납
되어 전체 수납율은 99.9%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징수율 (③/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0년	3,286,659	3,306,889	3,306,683	99.9	9	197
2009년	3,044,202	3,062,621	3,062,367	99.9	32	223
2008년	2,873,724	2,920,619	2,920,389	99.9	10	220

- 도교육청의 수납액은 예산현액 3조 2,866억 5천 9백 만원에 비하여 200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3조 3,066억 8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 증가하였음.
-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재무보고서¹³⁾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도 1.44% 보다 낮아진 1.2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사유는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되어있고, 수업료 등 자체재원이 경미하기 때문으로 향후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 3조 2,866억 5천 9백만원의 87.3%인 2조

13) 재무보고서 9page.

8,682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183억 9천 2백만원으로 내역은 2011년도 이월액 2,776억 9천 3백만원(이월율 8.4%), 불용액 1,406억 9천 9백만원임(불용율 4.3%).

◆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2010년	3,286,659	2,868,267	87.3	277,693	8.4	140,699	4.3
2009년	3,044,202	2,740,060	90.0	132,502	4.4	171,640	5.6
2008년	2,873,724	2,565,524	89.3	210,962	7.3	97,238	3.4
2007년	2,540,012	2,346,472	92.4	95,825	3.8	97,715	3.8
2006년	2,394,612	2,233,115	93.2	105,130	4.4	56,367	2.4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3%인 1,406억 9천 9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98억 5천만원, 예산절감 7억 8천 6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933억 5천 1백만원, 집행잔액 367억 1천 2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309억 4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금년 불용액은 전년에 비하여 18.0%가 감소한 금액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불용액 감소를 위해 추경에 편성한 사업

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증가하여 예산집행 실적은 오히려
예년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생	집행 잔액
2010	3,286,659	140,699	4.3	9,850		786	93,351	36,712
2009	3,044,202	171,640	5.6	31,531		2,546	84,260	53,304
2008	2,873,724	97,238	3.4	7,260		1,645	57,754	30,579
2007	2,540,012	97,715	3.8	19,939	4	2,475	43,908	31,389
2006	2,394,612	56,367	2.3	7,618	4	1,346	18,421	28,978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 금년 예비비 사용은 2010년 교장공모제 확대실시에
따라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추가실시에 따른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8천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천
2백만원임.
- 예비비는 긴급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교장
자격연수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시에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10년도 이월액은 2,776억 9천 3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4%의 규모로 지난해 1,325억 2백만원보다 109.6% 증가한 규모임.
-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6건에 1,355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51건 566억 8천 9백만원보다 139.1% 증가하였음.
-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소요일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요구됨.
- 특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의 경우¹⁴⁾ 사업자체에 대한 사전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예산 편성시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사업은 311건에 1,421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121건 758억 1천 3백만원에 비하여 87.5%

14) 본예산에 반영되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추경시에 시설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사전 이행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편성을 하되 시설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감안해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소 관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1	재 무 정 보 과	신설학교부지매입 (석적고, 경산특수학교)	1,477	1,477	본예산, 제2회추경반영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 지연
2	교 육 시 설 과	청도학생야영장시설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15	15	본예산 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3	도립구미도서관	기관시설유지관리 (강의실 및 지원실 구조개선 및 계단실 바닥개체)	31	31	본예산 반영 청사대수선 공사이연
4	경주교육지원청	통폐합학교지원 (양북초교직원사택건립)	200	200	본예산 반영 관계기관 협의지연
5	김천교육지원청	신설학교부지매입(남면초)	3,145	3,145	본예산, 제1회추경 반영 관계기관 협의지연
6	경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부지매입 (가칭)백천초)	5,391	5,391	본예산 반영.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 지연
7	"	국공유재산관리(진성초)	513	513	본예산 반영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 지연

◆ 이월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도	예산 현액	이 월 액			비 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0	3,286,659	277,693	135,555	142,138	8.4
2009	3,044,202	132,502	56,689	75,813	4.4
2008	2,873,724	210,962	122,477	88,485	7.3
2007	2,540,012	95,825	39,424	56,401	3.8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및 과다불용에 대하여

-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살펴보면 포항 신흥중학교 급식소증축사업, 경산 (가칭)백천초등학교 부지매입비를 전액 불용하는 등 사업비의 30%이상이 이월 또는 불용된 사업은 12건임.
-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해당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 명시이월액 집행내역¹⁵⁾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 관	사업명	명 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율	불용액	불용율
1	교 육 시 설 과	교사증축 (군위교)	6,729	2,802	3,903	58.0	24	0.4
2	"	교사개축 (영천교, 기계교)	4,108	2,007	2,087	50.8	14	0.3

15) 표설명 : 이월 또는 불용 30% 이상 사업

구분	소 관	사업명	명 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불용액	불용율
3	"	생활관증축 (문경공고, 점촌고)	3,132	1,532	1,541	49.2	59	1.9
4	"	급수실개보수 (포항고)	99	9	84	84.8	5	5.1
5	"	청도학생야영장 시설개선	9,300	3,277	5,899	63.4	125	1.3
6	포항교육지원청	급식소증축 (신흥중)	110	-	-	0.0	110	100.0
7	김천교육지원청	교사개축 (직지초)	4,090	379	3,711	90.7	1	0.0
8	문경교육지원청	우천통로설치 (산북초)	40	19	-	0.0	21	52.5
9	경산교육지원청	교사신축 ((가칭)백천초)	80	3	70	87.5	7	8.8
10	"	신설학교부지매입 ((가칭)백천초)	3,138	-	-	0.0	3,138	100.0
11	"	교사개축 (경산중앙초, 남산초삼성분교)	5,054	953	3,575	70.7	526	10.4
12	영덕교육지원청	외벽개선 (영해초)	30	20	-	0.0	10	33.3

□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하여

- 도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사업이 매년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나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12건 42억 5천 5백만원으로 나타남.
- 불용액의 증가는 시급한 사업의 지연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철저한 검토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천만원 이상 전액 불용 사업비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1,113			1,113	
1	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 보상금	30	-	-	30	공익신고자가 없어 지급사유미발생
2	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련 행사보조금	32	-	-	32	교육연구행사관련 지원 사업 미신청 3단체 및 1단체 미승인으로 지급 사유미발생
3	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시간강사	125	-	-	125	신청학교가 없어 사업 취소
4	"	유아교육지원사업	30	-	-	30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 취소
5	교육시설과	유아교육진흥원 설계비	600	-	-	600	기본계획재검토에 따른 계획 보류
6	교육연수원	신규임용교사 임용전후 연수	55	-	-	55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연수로 계획 변경
7	포항교육지원청	신흥중 급식소 증축시설 토지매입비	109	-	-	109	급식소 증개축 계획 변경으로 사업 취소
8	김천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16	-	-	16	연수 신청자가 없어 사업 취소
9	구미교육지원청	옥계동부초 학교증개축	99	-	-	99	학교증개축 계획 취소
10	경산교육지원청	경북체육고 학교시설 증개축	17	-	-	17	도교육청 이체된 사업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복편성

구분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11	"	백천초 신설학교 부지매입	3,120	-	-	3,120	축사시설로 인한 교육 환경평가심의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12	성주교육지원청	수준별이동수업 중심학교 운영지원	12	-	-	12	인턴교사 미채용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3	교육연구원	경북 E-교육방송 구축	10	-	-	10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병행에 따른 계획 변경

□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 경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박진현, 위원 8명)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¹⁶⁾을 제출하였음.
-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6) 결산검사 시정·개선 사항

구분	시정 및 개선 사항	해 당 부 서
1	공무원복지기금 운영 철저	재무정보과
2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확대	학교지원과
3	교육비특별회계 관리 철저	총무과 외2
4	교장공모제의 교장 자격 연수비 집행 철저	교육과정과 외1
5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확대	행정예산과
6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	행정예산과
7	영어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교육정책과
8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집행 철저	경상북도교육연수원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건 의 안

-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1. 6. 14

제 안 자 : 농수산위원장

1. 주 문

- 「불임 건의안」 과 같음.

불임 :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2. 제안이유

- 최근 지구 온난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파와 폭설 및 이상저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농업재해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유류대, 비료대 등 농업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수입증가는 농업경영 존립기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전대미문의 구제역 사태로 도내 가축의 20%인 429천 두를 매몰해야 했으며, 최근에는 소값 폭락에 수입 쇠고기 증가 및 소비감소까지 이어져 지역 축산업이 아예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임.
- 또한, 지난 겨울에는 영하 10℃ 이하 한파가 25일 이상

물아쳐 포도, 사과, 복숭아, 단감 등 추위에 약한 과수가
고사하거나 새순이 발현되지 않아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정상 생육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들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물론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기상이변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농업재해는 갈수록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함.

3. 이송처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정당(정책위의장)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문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이상한파와 폭설, 저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농업재해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유류대, 비료대 등 농업경영비는 상승하고 배추,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 농산물은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서, 농업경영 존립기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전대미문의 구제역 사태로 도내 가축의 20%인 429천두를 매몰해야 했으며, 최근에는 소값 폭락에 수입 쇠고기 증가 및 소비감소까지 이어져 축산농가의 가슴에는 피멍이 드는 등 지역 축산업이 아예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겨울에는 영하 10℃이하 한파가 25일 이상 몰아쳐 포도, 사과, 복숭아, 단감 등 추위에 약한 과수가 고사하거나 새순이 발현되지 않아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정상 생육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지원대책들은 재해를 입은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물론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고통을 같이하고자 하며,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이들 농업인들의 절규를 결집하여 다음 사항들을 건의하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국고지원대상 농가단위 재난지수를 30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영세농가도 피해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사과, 배, 단감, 뽕은 감은 타 작물과 달리 동상해가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해 발생시 실질적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종합위험보장형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보험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줄 것.

셋째, 사과, 포도 등 과수 동해 피해농가에 대하여 내년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영농비」를 지원할 것.

넷째, 구제역 사태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친환경 축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축산산업 진흥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다섯째, 최근 구제역 사태 이후 폭락하고 있는 산지 한우가격과 배추, 양파 등 채소류 가격 안정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체계 혁신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농산물 학교공급

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사업을 확대 지원할 것.

이와 같은 이번 농업재해에 대한 우리 농업인들의 건의는 생존권 확보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업재해는 갈수록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우리 농업인들이 마지막 남은 의욕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피해농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농업을 희생시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결 의 안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경상북도의회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 가운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했던 국제기구 권고와, 미국, EU(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2009년 7월 「대구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일본정부와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했던 청원과 의견서가 채택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내외적 권고와 결의를 즉각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화한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 규명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와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원전안전관리기술이 뛰어난 일본조차도 비상사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은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수원은 이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에 이른 원자로의 수명 연장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나 도민들과의 합의 하나 없이, 단지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설계수명 30년으로 내년 11월 수명을 다하는 월성원전 1호기를 다시 10년 연장운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울진원전 1, 2호기도 증기발생기라는 고준위에 가까운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원전부지 내에 보관하려고 저장고를 짓다 들통이 났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한수원은 국내원전이 일본 원전과 다른 발전방식, 탄탄한 내진설계, 철저한 쓰나미 대비책 마련 등으로 안전하다고 되풀이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하여도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월성 1호기는 국내의 다른 경수로와는 달리 중수를 감속재로 쓰는 중수로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아직 중수로의 수명이 연장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및 울진원전 1, 2호기 증기발생기 저장고 건립계획은 주민의 동의와 함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1.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울진원전 1,2호기 증기발생기 저장고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차제에 다른 노후화된 원전도 안전 최우선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로는 즉각
폐기하라.
1. 원전시설에 대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 지역민들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민·관
공동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즉각 공개하라.
1. 지진발생 빈도와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오늘도
묵묵히 한국 원전의 절반을 떠안고 있는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운영과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아울러 원전 인근주민의
체내 방사능물질 농도검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라
1. 우리 경북도의회는 도내 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의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300만
도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문

만만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적 동질성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과 역사인식 정립에 진력하여야 하는데도 국사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의해 마침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환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필수교과로의 환원은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인력 양성을 발굴하기 위한 사법시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국사는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사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국사교과가 어렵사리 필수과목으로 환원된 만큼 다시는 탈선이나 역행하지 않고 지속적·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사교육이 고등학교 단계를 넘어 대학진학과 사회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국사교육은 단순한 지식 나눔이 아니며 국가적으로는 공동체의 영혼을 불어넣고,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보는 혜안을 길러 주는 소양교육이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그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한 첩경이다 할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국가도 지키지 못하고, 또한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야만 한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국사교과 고등학교 필수과목 환원·결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국사교육이 대학진학과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국사교육이 국가관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진력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망언, 역사 교과서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국사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각 대학이 국사교과 내신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며, 대학교 교양과정으로 개설토록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교원임용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과 사법시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화하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차후 국사교과서 편찬 시 이념편향적·사대주의적 자학적 역사관은 지양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하여 국가의 정신과 역사의 혼이 담긴 역사교육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청 원

- 대구취수원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1. 4. 21

나. 청 원 자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
위원회

※ 청원소개의원 : 변우정, 김대호, 구자근, 박태환, 심정규,
윤창욱, 장영석, 전인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1. 4.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 2011. 5. 11 : 상정 · 질의 · 토론
-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 2011. 6. 13 : 토론 · 의결

2.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3. 위원회 공식의견 : <별첨>참조

의 결 서

○ 본 청원은

-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이하 “구미반추위”라 한다) 김재영·신광도 공동상임위원장 등 50,000명이
-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 청원인들은 청원취지에서

- 「구미반추위」가 제시한 상생대안을 토대로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협상하고,
- 동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창구를 경상북도로 일원화하며,
- 남강댐물의 부산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경상남도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등 경상남·북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경상북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의회에서는

-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사업이 이해당사자인 경상북도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구 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할 경우 농업·공업용수 수급 차질,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수도요금의 인상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판단 아래

- 2010년 11월 12일, 우리 도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간담회 시 대구광역시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 같은 달 15일, 제244회 정례회 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 본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지난 제247회 임시회 회의 시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고,
- 「구미반추위」가 제시한 상생대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 구미 정수장 취수보 붕괴,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캠프캐럴) 내 고엽제 매립문제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식수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여망이 클 뿐만 아니라
- 구미시는 물론 경상북도도 동 취수원 이전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 경상북도지사가 청원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본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지사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본 청원을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